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법제 연구

A Study on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이도희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Doh-Hee Lee(2dohee@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정지원법'에 대한 고찰과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 제1조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조 5항(기본이념)'의 반영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법은 5년마다 지원 및 관련 정책 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3년마다 계획 및 실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지원정책수립과 계획 및 실사조사 기간의 불일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법조항에서 임의규정(~을 할 수 있다)을 의무규정(~을 해야만 한다)으로의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날'을 지정하거나 다른 가족의 날과 함께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빠르게 변화되어온 글로벌화는 '다문화'라는 새로운 가족구성단위로 이어지면서, 그들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및 지속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중심어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의 날 |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and revis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for domestic multicultural families.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long with the current status and support policies of multicultural families.

First, as in Article 1 of the Act, it proposed to reflect Article 3 of the Article 5(basic ideas)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law contributing to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tegration'. Second,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at support and related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every five years, and by conducting planning and due diligence surveys every three years, it suggested the necessity of consensus on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support policy and the planning period. Third, the government proposed a revision to the mandatory regulation (that is, it should be done) under the provisions set by law. Finally, we proposed a plan to designate 'Multicultural Family Day' or to designate it with other family days. As the globalization of the members of each country, which has been rapidly continuing in the 21st century,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be able to welcome them and review the act and institutional devices that can be together more than ever.

■ keyword : | Multicultural Families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 Multicultural Family Day |

I. 서론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은 ‘소수집단’, ‘ethnic 집단’ 및 ‘소수민족집단’ 등으로도 불리는데, 이들은 문화 커뮤니티를 존중하고 서로지원하면서 이를 통하여 전체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고방식으로 형성된 이데올로기이다[1].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보다 공평하고 효과적인 통합의 수법이라고 주장돼 최근 20여 년 사이 많은 나라의 학계 언론계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 유력한 선택지로 인지되기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도 제기돼 왔다[2][3]. 특히 최근 들어 국제관계 긴장과 반이민 감정 고조를 배경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해 혹독한 비판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 다문화주의 정책 시비를 둘러싼 논란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4-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0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27만 2,613명의 다문화가족 수는 2050년에는 216만 4,886명으로 약 8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즉,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약 5%수준으로 예상됨으로써, 단일 민족 국가로 여겨지던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8-10]. Castles & Miller(2003)는 20세기 후반부터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 노동 및 자본의 교류가 용이해짐에 따른 세계화 및 글로벌화는 인력의 국제결혼이나 국제이동으로 이어지면서 국가간 인구의 이동의 지속적인 증가는 다문화의 자리매김에 영향요인을 강조하였다[11].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 및 법제도적 차원의 진단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현행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으로는 국내 거주 우리나라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양육의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지원법」¹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받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²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더불어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13-15]. 더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경우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의 참여를 통하여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고, 취학전 보육에 대하여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원사업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12][14][15]. 즉,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사회·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쌍방향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14][16][17]. 나아가, 건강증진 및 의료에 대한 더욱 다양한 정책적 방안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일련의 제도적 지원을 보더라도, 21세기는 다문화주의의 일반화가 우리사회에도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제도적 장치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고찰과 일련의 법제도적 차원의 현황을 고찰하였다. 즉, 국내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률로는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올바른 정착과 이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론에서는 전반적인 연구의 배경을 제시하고, 2장에서는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개념, 다문화가족 현황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과 법률적 장치의 현황을 고찰하였고, 4장에서는 3장의 고찰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서 5장의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II. 다문화가족의 개념 및 현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에서는 ‘다문화가족(multi-cultural family)’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

1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법률 제8937호로 2008년 3월 21일 제정, 9월 22일 시행되었다. 본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8].

2 현재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총217개가 운영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포털(<https://www.liveinkorea.kr>)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5].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19]. 이러한 '다문화가족'은 서로 다른 국적, 인종이나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으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족이나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통상적으로 지칭한다[4][20].

이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4].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받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하며,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과 산전·산후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들은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지원과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한 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4][21]. 이러한 지원을 받는 데에 있어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다국어에 의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12][17].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가 2010년 내놓은 '다문화 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의 규모는 2009년 27만 2,613명이었다[8]. 그러나, 2017년 말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증가한 다문화가족 전체 구성원의 지역별 분포를 볼 수 있다.

표 1.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2017.12월 말 기준)[22]

지역	명(%)	지역	명(%)
경기	554,160(31.8%)	전남	48,473(2.8%)
서울	457,806(26.3%)	강원	26,657(1.5%)
인천	91,525(5.3%)	대구	37,610(2.2%)
대전	25,190(1.4%)	경북	70,725(4.1%)
세종	4,302(0.2%)	부산	57,807(3.3%)
충북	48,002(2.8%)	울산	38,183(2.2%)
충남	83,524(4.8%)	경남	108,375(6.2%)
광주	26,536(1.5%)	제주	19,903(1.1%)
전북	43,141(2.5%)	계	2,049,441(100%)

이에 따라 총인구 대비 다문화 가족의 비율은 2009년 0.56%에서 2015년 1.05%, 2025년 1.99%, 2035년 3.04%, 2050년 5.11%로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단일민족 국가로 여겨지던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여 2017년 말 기준 다문화가족 2백만 시대에 도래하였다.

III.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및 법률 현황

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다문화가족을 위한 각 부처의 다양한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20].

첫째, 보건복지부의 지원 정책이다. 즉,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 관련 산전·산후 돌봄 서비스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둘째,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 정책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저소득 다문화 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해당 계층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희망에 따라 희망 교육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여성가족부의 지원 정책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두어 가족 교육, 상담, 다양한 정보 제공, 문화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 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국어

3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라는 민족주의, 순혈주의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하여, 다문화가족은 오랜 시간 혼혈 가족, 혼혈아 등으로 불리며 차별받아 오다가, 20세기 말 세계화와 이주화로 인한 외국인 유입 증가, 국제결혼 급증 등으로 다문화가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2003년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기존의 혼혈아, 국제결혼, 이종문화가족 등 차별적 용어 대신 '다문화가족'으로 대체하자고 권장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19].

교육 지도와 아동 양육 지도를 지원하고 있다.

표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2017년 12월 기준)[17]

지역	명(%)	지역	명(%)
경기	30(13.83%)	전남	21(9.68%)
서울	24(11.06%)	강원	18(8.30%)
인천	9(4.15%)	대구	7(3.23%)
대전	5(3.0%)	경북	23(10.60%)
세종	1(1.39%)	부산	9(4.15%)
충북	12(5.53%)	울산	5(2.31%)
충남	14(6.46%)	경남	18(8.30%)
광주	4(1.85%)	제주	2(0.93%)
전북	14(6.46%)	계	217(100%)

한편, 여성가족부는 각 시군구단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⁴는 두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기하고 있다. 즉, 본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연계,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7년 말 기준으로 [표 2]와 같이 217개소를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 서울, 경북 및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가족부(2019)[21]에서는 '2019년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모습의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와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일반시민과 이주민의 경계를 없애는 등 지역과 생활환경에 맞춘 지원을 강조하였다.

2.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법률 고찰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및 체계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 8937호로 제정되어, 9월22일 시행되었다. 본 법률(이

하 '법')의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18].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손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러한 '법'은 2018년 6월13일까지 총 11회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법률 제15204호의 규정을 두고 있다[18].

[그림 1]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법률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앞서 제시한 제정목적에서와 같이, 본 법은 다문화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그들이 구성원으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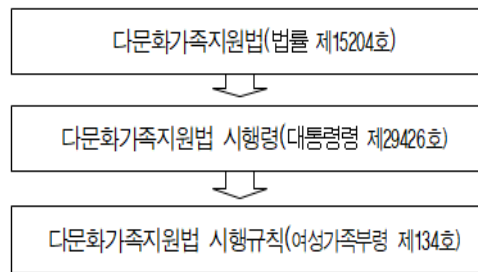


그림 1.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체계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제도 체계

[표 3]은 현행 '법'의 구성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법의 목적과 관련 조항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3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계획수립과 관련한 내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제4조의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제5조부터

⁴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https://www.liveinkorea.kr)는 13개국 언어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각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10조까지는 다양한 교육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언어와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3조와 14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및 지원사업 관련 연력관리, 제14조는 다문화가족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및 16조는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표 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체계[19]

구분	내용
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다문화가족 계획수립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실태조사 및 교육지원	제4조(실태조사 등)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센터 운영관리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 제12조의3(유시명칭 사용 금지)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교육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14조의2(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기타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5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7조(과태료) 부칙

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제도

본 법의 제3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정부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제3조의

2의 규정을 두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 및 현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수립에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련의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을 위하여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5조). 또한, 이들 다문화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대한민국에서의 원활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통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었다(제8조).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차별받아서 안 됨을 규정하고 있다(제10조). 더불어,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하고,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16조)[19].

IV. 다문화가족지원 법제에 대한 제안

1. '기본목적(이념)'에 대한 제정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목적)은 2008년 3월 제정 당시에는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지 못함을 제고하여 2015년 개정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과 더불어 사회통합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본 법의 목적과 기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본이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1조의 목적의 규정에서와 같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의 목적을 제고하여, '사회통합'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3조의5(기본이념)"규정[24]의 추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3조의 5(기본이념)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원활하게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2.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시기의 제고

현행 법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의 ①항과 제4조(실태조사 등)의 ①항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지원 및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즉,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은 '5년마다' 시행하여야 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기간이 불일치함을 알 수 있다.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본계획수립이 이

루어져야 한다면, 이들 시기에 대한 일치의 필요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즉, 다문화가족의 관리의 실효성 및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을 제고하여, '3년마다'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기본계획수립으로의 개정을 제안한다. 다만, 3년마다의 계획수립과 실태조사가 시기적으로 한 해에 이루어지기보다는 교차년도에 수행함으로써 정책수립의 효과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3. 다문화가족에 이해의 범위를 가족전체로의 확산 및 미등록자녀에 대한 관리 규정 제고

현행법 제4조(실태조사 등)의 ③항과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의 ①항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기본정보 제공을 통한 교육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규정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 및 교육지원에 대하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4조(실태조사 등) ...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을 제고한다면, 다문화가족을 형성하는 당사자인 '부부'에서 출발하고, 부부와 더불어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녀등록'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을 반영함으로

써 다문화가족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4조2(실태조사의 사후관리)'의 추가 개정을 제안한다.

제4조2(실태조사의 사후관리)

- ① 다문화가족의 자녀출생시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사후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기타 다문화가족의 자녀출생시 「모자보건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강제규정' 제고

본 법률의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볼 수 있다. 내실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제고한다면, “~를 지원해야 한다”의 '강제 규정'의 활용[24]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 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들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다문화가족의 날'지정 제고

현행 법률에서는 다양한 가족형성 과정을 제고하여 해당 가족의 평등한 가정문화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날을 지정하고 있다[24][25]. 예를들어, 5월 10일은 '한부모가정의 날'이며,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 5월 20일은 2007년 「재외의국인 처우기본법」에 의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날'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가정문화 확대”라는 지정배경을 강조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날'의 지정 역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평등한 가족문화의 형성과 자리매김을 위한 차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마련에 앞서, 자치단체차원의 지속적인 책임관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3][26].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15일이 '국제가정의 날'로 지정된 바, 5월 15일을 '다문화가족의 날'을 지정하여, 현행 법률 '제3조의 5(다문화가족의 날)'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제3조의5(다문화가족의 날) 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5일을 다문화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V. 결론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는 유교적 이데올로기 전통으로 이어져 왔었다. 그러나 세계화 및 글로벌화가 자리매김 하면서 한민족이 아닌 '다민족' 또는 '다문화'사회가 자리매김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는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사회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문화로 자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의 비율은 2009년 0.56%에서 2015년 1.05%, 2018년 1.16%, 2025년 1.99%, 2035년 3.04%, 2050년 5.11%로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말 기준 다문화가족 2백만 시대에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우리나라「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법제도적 차원

의 검토와 개선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고찰을 실시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이유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통합과 자리매김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함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동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체계를 두고 있다. 본 법률의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법의 목적과 관련 조항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3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계획수립과 관련한 내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제4조의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다양한 교육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언어와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제13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및 지원사업 관련 인력관리, 제14조는 다문화가족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처우, 제15조 및 16조는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련의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본 법의 제1조 목적의 규정에서와 같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의 목적을 제고하여, '사회통합'의 실현을 위하여 '제3조의5(기본이념)'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지원 및 관련 정책수립을 '5년마다' 시행하여야 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기간이 불일치에 대한 일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대

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녀등록'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문화가족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할 수 있는 규정을 현행 제4조2(실태조사의 사후관리)의 추가 규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률에서 전반적으로 임의규정을 두고 있음에 따른 정책의 적극적 추진의 한계를 제고하여,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의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5월 15일이 '국제가정의 날'로 지정된 바, 이 날을 '다문화가족의 날'로 함께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제고하여, 이에 대하여 현행 법률 제3조의 5에 '다문화가족의 날'에 대한 규정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어느 사회에든 '문화'는 그 사회의 일원에 의하여 형성되며, 그 문화는 바로 그 사회 및 국가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 21세기는 세계화 및 글로벌화시대를 고려하여, 각국의 구성원이 타국으로의 이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이는 문화의 이전과 전파로 이어지면서 각 국가는 '다문화사회'가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의 구성원 역시, '다문화가족', '다문화사회'에 대하여 배려깊게 수용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선진문화적 의식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때임을 생각해보자. 그들도 이젠 우리와 같이 함께 해야 하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1] 이산호, *다문화주의(세계화와 혼혈)*: Jacques Audinet, 경진, 2017.
- [2] 辻康夫, “多文化主義論の諸類型の検討— 複合的アプローチにむけて,” *法政理論*, 第45卷 第3号, pp.35-59, 2013.
- [3] 박광동, “다문화 사회와 법적 시사점,”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0, pp.59-81, 2016.
- [4] 이혜경,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의 정치철학과 정책방향의 모색,” *대한정치학회보*, Vol.25, No.4, pp.117-139, 2017.
- [5] 이정은, “이주자 내러티브를 둘러싼 사회적 역할의 지정과 정당화의 문제: 다문화 현장연구에서의 관점들에 대하여,” *어문논총*, Vol.72, pp.133-155, 2017.
- [6] 김용환, “혈오와 관용의 관점에서 “이방인(난민)” 바라보기,” *가톨릭철학*, Vol.31, pp.5-34, 2018.

[7] 신명희, “가족복지실천의 동상이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정책포럼, Vol.5, pp.3-11, 2018.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정책보고서, 2010.

[9] 법무부, “출입국자 6천만명 시대, 전체 인구의 3.5%가 외국인-2014년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발간,” 보도자료, 2015년 7월1일

[10] 송오식, “사회통합 내지 공존을 위한 다문화가족법 제 모색,”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3, No.1, pp.31-68, 2013.

[11] Castles & M.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Y: The Guilford Press, 2003.

[12] 김정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다문화가족의 이주사회 적응전략,” 지방정부연구, Vol.21, No.4, pp.267-292, 2018.

[13] 김태환, *다문화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14] 김태원, 김유리,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수준 분석: Castles and Miller의 모형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Vol.62, pp.323-362, 2011.

[15] www.liveinkorea.kr

[16] 塩原良和, 総論多文化社会における「つながり」の重要性と自治体対策の役割, シリーズ多言語・多文化協働実践研究, 第12号, pp.11-20, 2011.

[17] 양경은, 함승환, “이주배경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 소속감 격차: 다문화정책에 대한 함의,” 사회복지정책, Vol.45, No.1, pp.60-84, 2018.

[18] 변수정 등,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4.

[19] www.law.go.kr

[20] 권용혁, 한승완, 이우관, *한중일 사회에서의 다문화가족*, 하우, 2014.

[21] 여성가족부, 2019년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안, 2019

[22] ww.kostat.go.kr

[23] 이진석, “해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이혼 베트남 여성결혼 이민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Vol.9, No.3, pp.771-784, 2018.

[24] 박상기 외, *법학개론*, 박영사, 2018.

[25] 강위원,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요인과 통합정책,”

국가정책연구, Vol.20, No.2, pp.5-34, 2006.

[26] 권영호, “다문화 가족지원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Vol.20, No.1, pp.83-108, 2014.

저 자 소 개

이 도 희(Doh-Hee Lee)

정회원



- 2019년 5월 현재 :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
- 1994년 8월 : 충남대학교 경영학석사
- 2005년 2월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2005년 8월 : 충남대학교 경영학박사 관리회계전공
- 2012년 8월 :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법학석사
- 2019년 5월 현재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중 <관심분야> : 관리회계, 정부 및 비영리회계, 회계윤리, 법학, 사회복지학, 연구방법(양적, 질적)